

□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포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·공립대학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, 국·공립대학 도서관에 장기근속자에게 치사와 격려의 뜻으로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과 자격) 대상과 자격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.

- ①공로상 : 본 협의회 회원 도서관에 30년 이상 사서직으로 근무하고 명예퇴직 하거나 정년퇴직 하는 자, 또는 협의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
- ②공로상은 일금30만원 상당(2014년6월19일 개정)
- ③감사패 또는 공로패 : 본 협의회 또는 회원 도서관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

제3조(제출서류)

- ①이력서 1통(제2조 ①항 해당자)
- ②공적조서 1통(제2조 ①항, ②항 해당자)
- ③경력증명서 1통(제2조 ①항 해당자)

제4조(심사)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심사 의결한다.

제5조(시상)

시상식은 총회 또는 세미나 등 본 협의회 행사시에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이전에 포상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포상한 것으로 본다.

이 규정은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2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7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